#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3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5.

발 의 자 : 김 건 · 정성국 · 장동혁

안철수 · 김기웅 · 김석기

인요한 • 이성권 • 강선영

윤상현 • 권영세 • 조은희

김용태 · 박충권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,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.

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·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·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, 외국

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1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방문(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및 제13조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·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)	제11조(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)
(생 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유)
<u>&lt;신 설&gt;</u>	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방문
	(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
	다)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
	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및 제1
	3조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·반
	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
	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
	<u>할 수 있다.</u>